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[ ] 유선 승선료·선박 대여료 [ ] 도선 운임 신고·변경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유선: 즉시 도선: 3일

신고인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 소 (전화번호:)		

신고(변경신고) 사항	유·도선장의 위치			
	영업구역			
	선박명세			
	운항구간 또는 대선시간	운항구간 ~		대선시간 시간
	유선 승선료	대인 원		
		소인 원		
	유선 대여료	척 원		
	도선 운임	대인	일반관광객 원,	지역주민 원
		소인	일반관광객 원,	지역주민 원
		화물	일반관광객 원,	지역주민 원
	적용일			
	변경 사유			

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유선 승선료, 선박 대여료 및 도선 운임을 신고·변경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 고 인 제출서류	운임 산출계산서 1부(도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처리절차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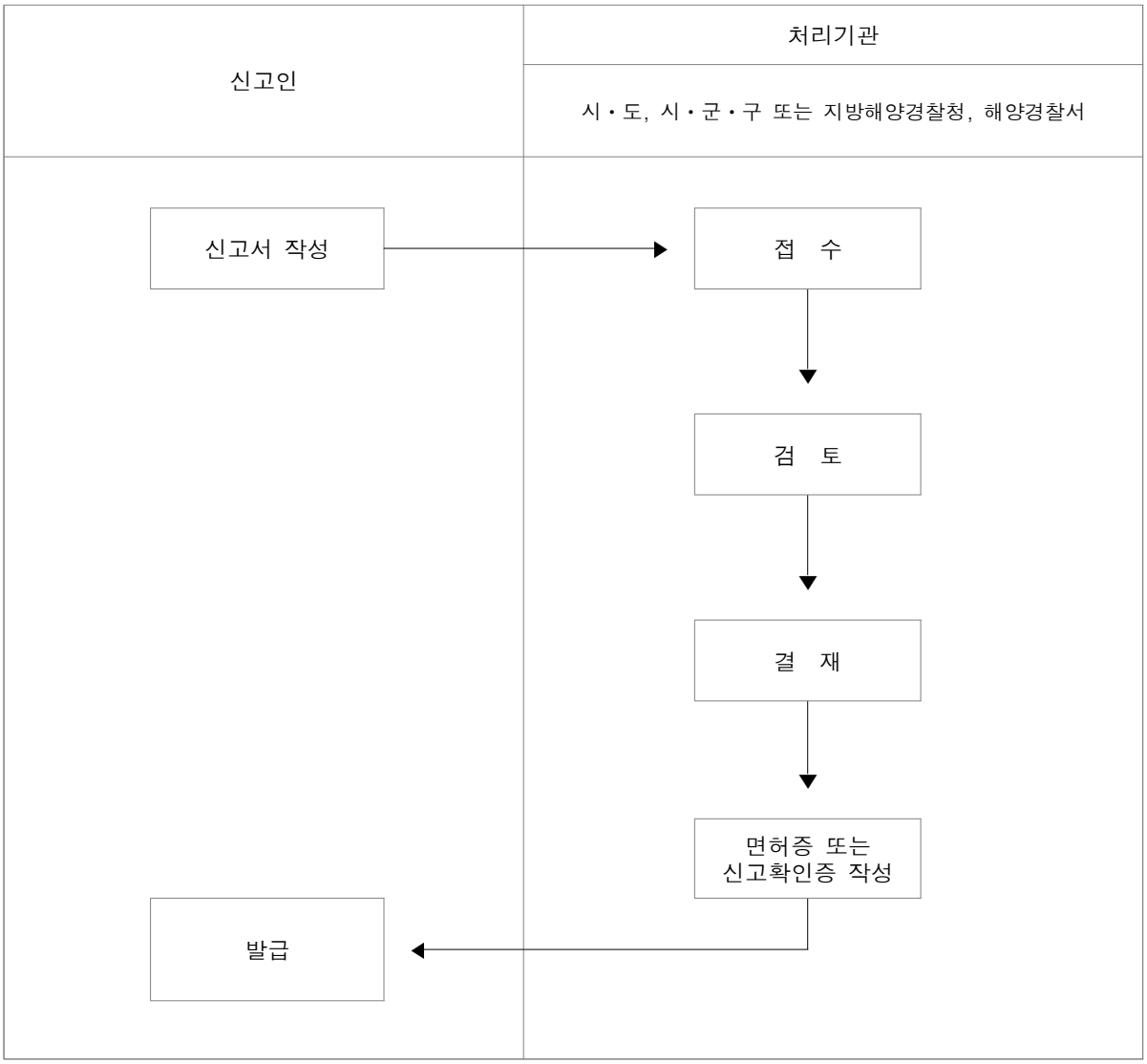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